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먹는물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한정애 (환경부장관)
제출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선 행정기관의 신속한 민원 행정처리를 도모하고자 시·도지사 등이 먹는물 관련 신고나 등록신청에 대한 처리 결과를 일정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수리·등록을 간주하는 등의 내용으로 「먹는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7840호, 2021. 1. 5. 공포, 2021. 7. 5. 시행)됨에 따라, 법률조항 변경에 따른 연관 인용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21.00.00. ~ 00.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의 제목 “(샘물등의 개발 가허가 변경신고 대상)”을 “(샘물등의 개발 임시 허가 변경신고 대상)”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제6호의2 중 “제6항”을 “제8항”으로, “접수”를 “접수 및 변경신고의 수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의2 중 “제6항”을 “제8항”으로 하며, “접수”를 “접수 및 변경신고의 수리”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관한 것에 한한다”를 “다른 청문만 해당한다”로 한다.

별표 2 제2호.나목2)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8조의2제2항 또는 제3항”을 “법 제8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가허가”를 “임시 허가”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제5항까지”를 “제3항까지,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위반행위란 중 “법 제21조제7항”을 “법 제21조제11항”으로, “아니하거나”를 “않거나”로 하며, 같은 호.자목 2) 위반행위란 중 “법 제43조제10항”을 “법 제43조제12항”으로,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고, 같은 호 카목 위반행위란 중 “법 제43조제11항”을 “법 제43조제13항”으로,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2(<u>샘물등의 개발 가허가</u> <u>변경신고 대상</u>) (생 략)	제3조의2(<u>샘물등의 개발 임시 허</u> <u>가 변경신고 대상</u>) (현행과 같 음)
제20조(위임 및 위탁) ① (생 략)	제20조(위임 및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환경 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 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②----- ----- ----- -----.
1.·2. 삭 제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6의2. 법 제43조제1항 및 제6항 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 분 야의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한정한다)의 지정, 변경신고의 접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6의2. ----- 제8항- ----- ----- ----- ----- 접수 및 변경신고의 수리--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③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환경 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③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의2. 법 제43조제1항 및 제6항	1의2. ----- 제8항-

에 따른 검사기관(제2항제6호의2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과 정수기품질검사기관은 제외한다)의 지정, 변경신고의 접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 ----- ----- ----- <u>접</u>
2. <u>법 제43조제4항</u> 에 따른 수질 측정·분석에 관한 능력 평가	<u>수 및 변경신고의 수리</u> -----
3. 법 제50조제1호에 따른 청문 (제1호의2에 따라 위임된 권한에 관한 것에 한한다)	2. <u>법 제43조제6항</u> ----- ----- 3. ----- ----- - <u>따른 청문만 해당한다</u> ----- -----
4. (생략)	4. (현행과 같음)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연 락 처	(044) 201 - 7118